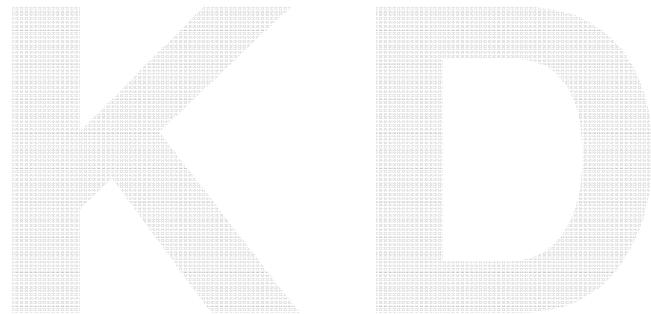


기준일 공고

상법 제 354 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2 조에 의거하여 2020 년 9 월 11 일 현재 주주명부에
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경동전자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

2020 년 8 월 14 일

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95
주식회사 경동나비엔
대표이사 손연호